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알아보기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이란?

- 공무원 임용 이전의 군복무기간을 현재 공무원 재직기간에 가산하는 제도
- **부사관·장교 복무기간**(군인연금 가입기간) → '**재직기간 합산**' 대상

산입 대상

1. 일반 현역(전투·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포함) 및 상근예비역 복무자
2.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대체복무는 제외
3. 대체복무요원(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역 소집)
4.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복무자(일반하사)
 - 지원에 의한 부사관 복무는 군인연금법 적용으로 '재직기간 합산' 대상
5. 공종보건의사(1979.1.1. ~ 1992.5.31. 복무자)
 - 1992.6.1. 이후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으로 '재직기간 합산' 대상
6. 자연계교원요원 및 특수전문요원(실복무 6개월 산입)

신청 기간

-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최소·재승인·정정 역시 재직 중에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접속
2. 우측 상단 '연금복지포털' 클릭
3. '연금복지포털' 로그인 후 '연금서비스' 클릭
4.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 '임용 전 복무기간 신청' 클릭
5. 정확한 개인정보 및 병적 사항 입력 후 '신청' 클릭

※ 취소·재승인·정정 모두 위와 같은 절차로 신청 가능



서면 신청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접속
2.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 서식'클릭
3.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서' 작성
4. 팩스(064-802-2844, 3) 또는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송부

산입에 따른 기여금 납부

군복무기간 산입 승인 다음 달부터 산입기간 동안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일시납부 가능)

예시) 2023.8.16. 24개월 산입 승인 받은 자의 다음 달 납부해야 할 일시납부액은?

: 2023년 9월 일반 기여금이 300,000원인 경우, 소급기여금 일시납부액은 7,200,000원
(24개월 * 300,000원)

취소·재승인·정정 신청

- **취소** : 납부가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산입 취소 가능
예시) 2023.8. 납부 개시로 분할납부 중인 자가 2023.10.1. 취소 신청 시 2023.11. 이후 기간에 대하여 취소 가능
- **재승인** : 취소 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산입 재승인 가능
- **정정** : 잘못 산입된 병적 정보에 대하여 정정 신청 가능





신청 전 필독사항

1.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시 소급기여금 일시납부·분할납부 중 선택 가능하며, 기여금이 매년 5월 변동되므로 분할납부 시 소급기여금 월 납입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분할납부 중에도 잔여 소급기여금에 대하여 일시납부가 가능합니다.
3.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에 기 산입되어 있는 경우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4. 보충역(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른 인정월수만 산입됩니다.
5. 임용일 이후 입대한 경우는 병역복무 휴직으로 별다른 신청 없이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소급기여금 발생은 동일)
6.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 인정과 공무원 호봉 산정은 별개입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보수규정」이 일부개정 (시행 2024.1.12.)됨에 따라 현역 복무에 갈음한 실무종사기간(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 복무경력이 호봉에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실역(實役)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더 알아보기

방위 2개월 추가산입이란?

1982.9.10. ~ 1985.12.31. 기간에 입대하여 방위병으로 14개월 복무하였으나, 12개월만 산입 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을 추가 산입도록 하는 제도

신청방법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접속
2. 우측 상단 '연금복지포털' 클릭
3. 로그인 후 '연금서비스' →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클릭
4. '임용 전 복무기간 정정(추가) 신청' 클릭
5. 변경사항 선택에서 '방위 2개월 추가 산입' 체크 후 '신청' 클릭

유의사항

1.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산정식에 따라 **방위 2개월 추가 산입으로 연금액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어**, 담당자에게 확인 후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발생하는 소급기여금은 2018년 9월 기여금에 승인 당일까지 일할이자가 가산된 금액의 2개월분입니다.

※ 납부총액 = (2018년 9월 일반기여금액 + 일할이자) * 2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

